

# 2인 이상 수의견적 제출 공고(공사)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경 환경정비공사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우리 공사는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선물, 편의 제공 등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비위사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애로·건의사항이 있을 시 아래 채널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화성도시공사 고객지원센터
  - ▶ 1577-1488
- ☆ 화성도시공사 헬프라인 앱(APP)
  - ▶ 우측 QR코드 스캔
- ☆ 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
  - ▶ [참여·소통] → [통합신고센터]



※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고문 관련 문의 : [계약부서 \(☎ 031-8012-7775\)](tel:031-8012-7775)
- 시방서(과업지시서), 사업 관련 문의 : [발주부서\(☎ 031-8003-4440\)](tel:031-8003-4440)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                            |            |                       |
|------------|----------------------------|------------|-----------------------|
| 건 명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경 환경정비 공사     |            |                       |
| 공사 기간      | 착공일 ~ 2026. 10. 31.        |            |                       |
| 공사 내용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3개소) 내 조경 환경정비 |            |                       |
| 공사 현장      |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외 2개소       |            |                       |
| 계약 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 |            |                       |
|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 2026. 6. 23.(화) 09:00      |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2026. 6. 25.(목) 10:00 |
| 개찰 일시      | 2026. 6. 25.(목) 11:00      | 개찰 장소      | 화성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 추정 금액      | 금15,596,900원               | 기초 금액      | 금15,596,900원          |
| 업종<br>금액비율 | 추정 금액 (비율)                 |            | 금15,596,900원          |
|            | 기초 금액 (비율)                 |            | 금15,596,900원          |

※ 추정가격(금14,179,000원) + 부가가치세(금1,417,900원)

##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 대상 계약입니다.
-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3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 가. 전자입찰 개시 일시 : 2026. 6. 23.(화) 09:00
- 나. 전자입찰 마감 일시 : 2026. 6. 25.(목) 10:00
- 다. 개찰 일시 : 2026. 6. 25.(목) 11:00
- 라. 개찰 장소 : 화성도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 4 입찰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업종코드: 4993] 전문공사업(조경 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를 등록한 업체**
- 다.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화성시**에 있는 업체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현장설명서 및 기타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열람장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석우동 660  
※ 방문 전, 유선상 담당자 일정 확인 후 방문 권장 (**☎ 031-8003-4440**)

##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 하되,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낙찰자 결정기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견적제 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다.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초금액에 발표된 대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 구분 | 국민건강    | 국민연금    | 노인장기요양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합 계     |
|----|---------|---------|--------|-----------|---------|---------|
| 금액 | 285,082 | 376,674 | 37,459 | 164,151   | -       | 863,366 |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주처(공사감독부서) 제출하고 공사감독부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분에 대하여는 공사비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화성도시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 안전관리 규정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이에 따라 낙찰자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금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른, 「하도금지킴이」 시스템 이용 안내
-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공사는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한 공사 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하도금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금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금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계약체결 시 하도금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하도금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금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5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가.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화성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화성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화성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근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 노무비를 청구(근로자 성명, 임금, 연락처 등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입금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내역을 발주기관(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7 기타사항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해당시)
- 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9일

화 성 도 시 공 사 재 무 관